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6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재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규남, 김동욱, 김영옥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박 석, 박성연, 박중화,
서호연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성배, 이영실, 이종태,
이종환, 이희원, 장태용,
최민규, 한 신, 허 훈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 및 관계법령 기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법 및 동 조례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현행화함(안 제19조 및 제29조, 안 별표 1 및 별표 3).
- 나.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(안 제33조).
- 다. 용어 순화,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축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사용자 등”을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”를 “일반용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수도사용자”를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4항 중 “날 수”를 “사용일수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수도계량기로서”를 “수도계량기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날 수”를 “사용일수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7조제3항제3호 중 “수용가”를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3항 본문 중 “사회복지수용시설, 고시원”을 “사회복지생활시설, 다중생활시설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수도사용자 등”을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”을 “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”으로, “날 수대로”를 “다음 계산식에 따라”로, “부담해야”를 “징수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의 계산식 중 “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/월력(월력)일수)”을 “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/납부기한의 다음 달 일수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체납금(연체금 포함)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수도사용자 등”을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게을리 하여”를 “게을리하여”로 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수도사용자”를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용가”를 “수도사용자등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처리 할”을 “처리할”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[별표 1]

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

업종별	구분내용
가정용	가.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.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의 소매점 다.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. 신문보급소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.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. 기숙사 사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, 사회구호단체, 국가유공자단체 아.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·경비실·공동화장실·노인정·음수대·운동시설(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) 등에 대한 급수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다중생활시설(다만, 오피스텔은 제외)
욕탕용	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목욕장업(다만, 관광호텔 내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)
일반용	가. 임시급수,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(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) 나.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(퇴수·세척용수 포함) 및 급수차 사용량과 운반급수 다.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

[별표 3]

누수 등의 발생시 사용요금 정산 방법(제26조제3항 관련)

누수량 산정	정상 사용량 판단	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
검침량 - 정상 사용량	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	누수된 양의 1/2은 경감하고 나머지 1/2에 대한 요금을 산정한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수도계량기 분리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수도계량기 분리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수도사용자등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사설소화용 급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<u>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</u>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사설소화용 급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일반용</u> ----- -----.</p>
<p>제21조(급수정지 및 사용제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<u>수도사용자</u>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21조(급수정지 및 사용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수도사용자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3조(수도요금의 징수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23조(수도요금의 징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의
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
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
하여 부과하되, 사용량의 소수점
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
10원 미만은 버린다.

제24조(업종의 적용) ① 업종을 달
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
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요금은
높은 요금의 업종을 적용하여 산
정한다.

② (생략)

③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업종 변경
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
에는 해당 급수업종별로 각각 날
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.

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 ① 시
장은 2개월 주기로 수도계량기로
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
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
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④ -----

----- 사용일수 -----

-----.

제24조(업종의 적용) ① -----
----- 수도
계량기로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사
용일수 -----.

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 ① --

----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
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
구성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
의 부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
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,
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
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1. 2. (생략)

3.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
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

4. (생략)

④ (생략)

제29조(세대분할) ①·② (생략)

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,
사회복지수용시설, 고시원 등은
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
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다른
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7조(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
구성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수도사용자
등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세대분할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
사회복지생활시설, 다중생활시설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3조(체납관리)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,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연체금 = 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/월력(월력)일수)

② (생략)

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수도사용자등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체납관리) ① -----
-----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-----
----- 다음 계산식에 따라 ----- 징수하여야 -----
-----.

----- 미납요금×(3/100)×(체납일수/납부기한의 다음 달 일수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체납금(연체금 포함)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

제40조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 ①
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
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
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
시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
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
의 책임으로 한다.

제43조(정수처분) ① (생략)

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
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
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부서에 그
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
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
할 때에는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
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
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
있다.

⑤ (생략)

제48조(사무위임) ①·② (생략)

다.

제40조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 ①

수도사용자등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게을리
하여 -----
-----.

제43조(정수처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수도사용자등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수
도사용자등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사무위임) ①·② (현행과

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·재산압류 및 해제,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·2. (생략)

같음)

③ -----

- 처리할 -----.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및 관계법령 기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